



남양주금곡 이화신도브레뉴 공가주택 일반매각 공고

[무순위, 인터넷(모바일)청약, 현장접수 불가]

[공고일 : 2024.7.24]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인)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모집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모바일 청약만 가능]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7.24(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인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거주지역,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 고	주택(공가)개방	신청접수	당첨자(예비자) 발표	서류제출	계약 체결
2024.7.24.(수)	2024.8.9.(금) (10:00~16:00)	2024.8.14(수) (10:00~16:00)	2024.8.20(화) (16:00 이후)	2024.8.21(수)~8.23(금)	2024.9.3(화) (13:00~16:00)
	해당단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 앱 ※현장접수 불가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관리팀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76번길 116 (용현동 527-1) 1층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80(다산동6062) 신해메디컬타워4층

- 금회 공고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 매각을 위한 것으로 **신규 세대가 아니오니**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우리 공사(LH)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 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 전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디지털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누수,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본인이 주택 개방일에 현장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매각공고일 현재 국내(전국)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법인, 사업자 불가)** 이 경우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중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불필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당첨일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 재당첨기간 내 당첨자 청약 가능)**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제53조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LH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등 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현장계약만 가능합니다. 현장 계약 체결일에 LH경기북부지역본부에 'VI. 계약시 구비서류'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 체결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잔금 납부기한(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납부일) 이후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기간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 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진행하며 계약시 필요서류(신분증, 날인 등) 제출에 협조하여 주셔야 합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세대구성원 전원)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 시 신청자(당첨자) 이외의 자로 계약하실 수 없으며,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또한 이번 공급 되는 주택은 전매(소유권이전등기 전 명의변경)가 불가한 주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매매가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10%)을 공제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매각대상 및 매각가격, 분양대금 납부 방법

1. 매각대상 단지현황

단지명	주소	준공년도	단지 세대수	세대당 주차수	매각대상 세대 최초입주	난방방식
남양주금곡 이화신도브래뉴	경기도 남양주시 사릉로58번길 4-30 (금곡동 776)	2008-12	182세대	189대 (세대당 1.03대)	2008-12	개별난방

2. 매각대상 호별내역 및 매각가격 (총1호)

단지명	동	호	유형	대지권 (㎡)	세대당 계약면적(㎡)					주택가격(원)		
					공급면적			기타 공용	합계	계	계약금(10%)	잔금(90%)
					전용	주거공용	계					
남양주금곡 이화신도브래뉴	103	401	59	33.0474	59.9908	21.6955	81.6863	30.2360	111.9223	294,500,000	29,450,000	265,050,000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기타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3. 분양대금 납부

■ 분양대금(공급금액)은 ①계약금 + ②잔금 + ③관리비에치금으로 구성됩니다.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

분양대금 납부 계좌번호 : **농협은행 301-0335-3660-31 (예금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 반드시 계약자명으로 입금바랍니다.**

- 계약금 : 계약 체결기간 내 납부, 계약금 납부 이후부터 계약체결 가능(현장수납불가)
- 잔금 : 입주지정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내 일시납 (선납할인 미적용)
 -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계좌로 납부(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이내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당일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하며, 소유권이전서류 준비를 위하여 잔금납부일 최소 10일 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예) 101동 104호 홍길동 → 101-104 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선납 시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기 기한까지 입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잔금 연체 시 적용 연체이율 : 연 8.5% (추후 변동 가능)]

입주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 입주 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잔금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계약금 상당)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정 등에 따라 대출규모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택자금조달(대출 등)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연체 및 계약 해지 등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혼돈방지를 위하여 계약금 이후 입금시 잔금, 관리비에치금을 구분 가능하도록 별도납부(총2회) 바랍니다.

■ 관리비 예치금

- 관리소에서는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부과하며, 최초 주택 매입 시 우리공사가 관리비 예치금을 선납부 하였으므로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은 관리비에치금을 우리공사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세대별 관리비 예치금은 계약자에게 추후 개별 안내)

• 화재보험료 : 잔금과 함께 납부(계약시 별도 안내)

- 우리 공사가 관리사무소와 화재보험료를 잔금납부일까지에 일할 정산하며, 관리소에서 추후 세대당 부과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 우리 공사가 관리사무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잔금납부일까지 일할 정산하며, 관리소에서 추후 세대당 부과합니다.

• 열쇠불출 및 관리비 부과

- 계약금, 잔금, 관리비에치금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불출(개별 비밀번호 알림)되며, 입주일(열쇠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입주시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등이 계약자에게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일 2024.9.3.부터 60일, 2024.9.3.(화) ~ 2024.11.04.(월)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7.24) 현재 전국(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합니다.(1세대 내 2건 이상 신청 시 중복계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 범위(자격검증대상)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계약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2.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방법

• 금번 모집공고는 무순위 공급으로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는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급세대수의 5배수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계약기간에 미계약자가 있을 경우 당첨자 결정시 선정한 예비순번대로 개별 통보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예비자의 지위는 금회 공고에 한하며, 미계약 잔여세대가 없는 경우 예비자 지위는 삭제 처리됩니다.

III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4.8.20.)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상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 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법 시행일(2018.12.11.) 이후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청약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18.12.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산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 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 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 해당 조항의 소명자료로 해당 건물이 속한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할 경우, 해당 서류에는 반드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함' 등의 문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 외(발급기관 자체 양식에 따른 해당 문구 미포함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하며, 소명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음)에는 불인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소형·저가 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이하로서 주택가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함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IV 세대개방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

1. 주택개방 및 점검

단지명	동 - 호	개방일시	비고
남양주급곡 이화신도브래뉴	103 - 401	2024.8.9.(금) 10:00~16: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103동 앞 상주

- 해당 주택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 및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로 계약)
-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열람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단지에 대한 주차가 어려우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개방 일정일 해당동(103동) 앞에서 안내요원 상주 예정

2.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비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성년자	2024.8.14.(수) (10:00~16:00)	인터넷·모바일 신청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3. 신청방법 (PC인터넷 · 모바일 신청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무순위공급신청[무순위 공급]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2024.8.14.(수) (10:00~16:00)
 -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신청 당일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4.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신청일시 이후로는 청약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해당기간에 접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V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구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당첨자)
일시	2024.8.20.(화) 16:00이후	2024.8.21(수) ~ 8.23(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LH 방문제출 혹은 등기우편]	2024.9.3(화) (13:00~16:00)
장소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LH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관리팀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용현동 527-1) 1층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80(다산동 6062) 신해메디컬타워4층

당첨자 확인 방법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LH청약플러스앱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여부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계약 체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함께 발표되며,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및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분양전환상담센터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등기우편 및 LH 방문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7.2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서류 제출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표기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LH가 신청자의 신청자격 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조사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불가능합니다.(동의서 양식은 LH청약플러스 입주자모집공고에 별도 첨부)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 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청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2024.7.2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우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양식 공고문 <붙임> 참조
○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구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③ 주민등록표초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배우자	• 본인 신청 시는 본인의 신분증 제출, 배우자가 대리 신청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본인 신청 시 서명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도장 지참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			신청자 본인 인감증명서(신청자 본인발급분)가 첨부된 위임장, 신청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VI 계약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7.2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지정된 계좌로 입금 후 내방, 현장수납 불가) ※ 계약자명으로 입금[납부계좌 : 농협은행 301-0335-3660-31 (예금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③ 당첨자의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V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계약,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순번추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관리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고객센터 → 분양주택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계약·입주

- 당해 주택은 계약자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체결이 불가능합니다.
- 잔금납부기한(잔금납부기한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잔금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서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며 필요서류 제출요청시 협조하여 주셔야 합니다.
- 이 주택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동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잔금 및 관리비에치금 납부 완료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며, **등기이전 비용은 매수인 부담입니다.**
- 본 공고 중 누락 및 오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에서 보완 또는 수정하여 적용합니다.

3. 시설관련 유의사항

-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당첨자는 계약 전 세대 개방일에 반드시 세대를 확인 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도시가스, 전기시설, 통신시설, 샷시, 도배, 장판, 싱크대, 욕실 도기류, 세대열쇠, 전기·전자 제품, 기타 마감재 등 일체)의 파손, 노후화, 변색, 고장, 분실, 미비 및 청소 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및 기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대 열람 후 계약포기시 불이익은 없으나, 계약 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주택가격 10% 상당의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반드시 주택을 직접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도 일부세대는 구조와 내부 상태가 다릅니다. 계약체결 전 반드시 해당 세대를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하자보수 및 재시공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재 고장 또는 사용이 가능한 빌트인 제품도 내용연수가 경과하였으므로 하자보수가 불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장소 안내]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80
 (다산동 6062) 신해메디컬타워 4층

문 의	LH 분양전환 상담센터 02-6040-1490 (평일 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인 터 넷	LH 홈페이지: http://lh.or.kr LH 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

2024. 7. 2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